

구리-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성백진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 1943 호

다. 제출일자 : 2017. 7. 28.

라. 회부일자 : 2017. 8. 2.

2. 주 문

- 구리~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 이후 통행료를 실시협약 당시 책정된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하여 이용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용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통행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 해줄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함

3. 제안이유

- 지난 6월 30일 구리~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발전은 물론 만성 정체에 시달리던 동부간선도로와 43번 국도의 교통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음
- 하지만,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주민들의 이용부담 증가는 물론 지역 개발 효과까지 반감시킬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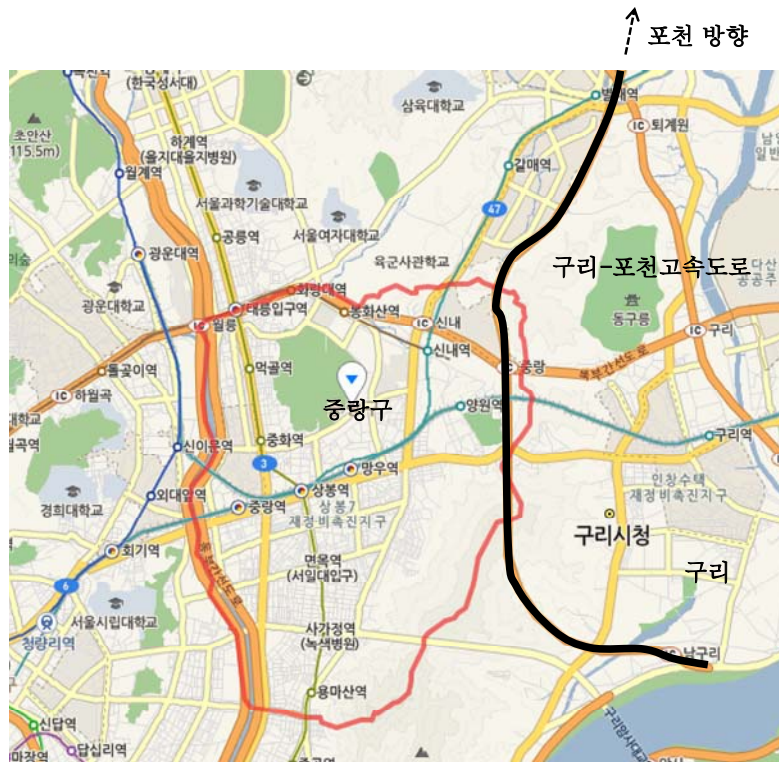
- 특히 구리, 남양주, 의정부, 포천 등 열악한 도로환경을 가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내부 통행이 많은 점과 요금이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전례가 있어 지역 내 불만 여론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, 도로건설에 대한 재정부담이 이용주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초 실시협약에서 약속한 요금수준으로 인하 해결 것을 관계 부처 및 기관에게 강력히 건의함

4. 이송처

- 가. 국 회 : 국토교통위원회
- 나. 정 부 : 국무총리실, 국토교통부
- 다. 기 관 :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

5. 검토의견

- 구리-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연결(L=50.6km)하는 BTO¹⁾방식의 민자고속도로로 지난 6월 30일 개통하였음.
- 동 고속도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서울시 중랑구 일부 구간을 관통하고 있으며, 중랑 IC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구리-포천고속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북부간선도로 등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의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.



[그림] 구리-포천 고속도로 중랑구 관통구간

- 본 건의안은 구리-포천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2010년 실시협약 당시 2,847원(2004년 6월 물가, 승용차 기준)으로 책

1) BTO(Build-Transfer-Operate):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

정했던 것을 개통시점에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953원이 증가한 3,80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초대비 133%가 인상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요금 인하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건의하는 것임.

- 먼저, 민간투자사업도로 통행료 산정에 대해 살펴보면, 통행료는 기획재정부의 ‘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’ 제11조에 따른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 산식에 근거해 결정되며,

[참고]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조(기획재정부)

$$\sum_{i=1}^n \frac{CC_i}{(1+r)^i} = \sum_{i=n+1}^N \frac{OR_i - OC_i}{(1+r)^i} + \sum_{i=1}^N \frac{ANR_i}{(1+r)^i}$$

여기서, n : 시설의 준공시점

N :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점

r : 사업의 실질수익률(IRR)

CC_i : 시설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사업비용

다만,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

OR_i : 매년도 운영수입

OC_i : 매년도 운영비용

ANR_i : 부대사업 운영으로 인한 매년도 순익(수입-비용)

- 통행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인 ① 준공을 위한 투입 비용, ② 협약교통량에 따른 운영수입, ③ 운영비용, ④ 사업수익률 등이 반영되고, 여기서 산정된 통행료에 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통행료가 최종 결정됨.
- 따라서 2010년 최초협약 당시 결정된 기준통행료(2,847원)는 앞서 ①~④까지의 항목이 반영되어 계산된 값이며, 실제 개통

시점의 통행료(3,800원)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이 누적 적용된 결과라 할 수 있음.

-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기준통행료(2004.6월 기준)에 2004. 6월부터 운영개시일 직전 3개월인 2017년 3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(35.2%, 통계청)을 누적 적용한 것으로,
- 이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」 제23조2)제2항에 따른 적절한 절차라 할 것임.
-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약정했던 금액(2,847원) 대비 크게 증가(953원)한 것에 대해 체감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,
- 또한 구리-포천 고속도로의 요금제를 살펴보면, 통행거리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‘기본요금’과 통행거리에 비례해 부과되는 ‘주행요금’이 결합된 ‘이부요금제(기본요금+통행거리×통행거리당 요금)’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과차량보다는 인접도시로의 단거리 이동 차량의 경우 통행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

2) 제23조(사용료)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, 적정 수익률,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·수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.

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사용료 징수 시작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
1.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
2. 사용료의 산출기초
3. 사용료의 징수방법
4. 사용료의 감면을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
5.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
6.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는 물가 변동이나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수밖에 없는 구조임.

- 따라서, 주무관청(국토해양부)은 이용자들의 요금인하 요구에 부응하여 민간사업자(서울북부고속도로(주))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기본요금 인하, 사업수익률 재조정, 협약교통량의 합리적 조정, 그리고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이 경감될 수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.

[붙임] 구리-포천고속도로 사업개요

구리-포천고속도로 사업개요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규모

- 본선구간 : 경기 구리시 토평동 ~ 경기 포천시 신북면 (44.60km)
- 연결구간 : 경기 포천시 소흘읍 ~ 경기 양주시 봉양동 (6.00km)

○ 총사업비 : 28,687억원 (민간 15,792, 보조 167, 보상 12,728)

○ 공사기간 : 2012.06 ~ 2017.06 (60개월)

○ 운영기간 : 2017.06 ~ 2047.06 (30년)

○ 추진방식 :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

○ 사업시행자 : 서울북부고속도로(시공 : 대우건설 등 11개사)

○ 통행료(1종)

구분	갈매동 구릉	북중랑	남별내	동입정 부	민락	소흘	옥정	양주	선단	포천	신북
갈매동 구릉	-	-	1,900	2,300	2,500	2,900	3,200	3,200	3,300	3,600	3,800
북중랑	-	-	1,600	2,000	2,200	2,500	2,900	2,900	2,900	3,200	3,400
남별내	1,900	1,600	-	1,500	1,700	2,100	2,500	2,500	2,500	2,800	3,000
동입정 부	2,300	2,000	1,500	-	1,300	1,700	2,000	2,000	2,000	2,400	2,500
민락	2,500	2,200	1,700	1,300	-	1,500	1,800	1,800	1,800	2,200	2,300
소흘	2,900	2,500	2,100	1,700	1,500	-	1,500	1,500	1,500	1,800	2,000
옥정	3,200	2,900	2,500	2,000	1,800	1,500	-	-	1,600	1,900	2,100
양주	3,200	2,900	2,500	2,000	1,800	1,500	-	-	1,600	1,900	2,100
선단	3,300	2,900	2,500	2,000	1,800	1,500	1,600	1,600	-	1,400	1,600
포천	3,600	3,200	2,800	2,400	2,200	1,800	1,900	1,900	1,400	-	1,300
신북	3,800	3,400	3,000	2,500	2,300	2,000	2,100	2,100	1,600	1,300	-

□ **자본구조 및 주주현황**(금융약정 체결일 : `13.11.21)

○ **자기자본비율이 15%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자본금 조달 조건 충족**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차입처	연이자율	약정금액	비율
장기대출Ⅰ	한국산업은행 등	기준금리(*)+ 1.9%	4,060	85%
장기대출Ⅱ	교보생명(주) 등	5.0%	3,000	
장기대출Ⅲ	교보생명(주) 등	5.7%	3,500	
후순위대출	중소기업은행	8.4%	3,250	
대출합계			13,810	
자본금			2,438	15%
대출과 자본금 합계			16,248	100%

○ **주주현황**

(단위 : 주, 천원)

주주명	주식수	출자금액	지분율
중소기업은행	24,380,000	121,900,000	50.0%
(주)대우건설	6,826,400	34,132,000	14.0%
한국도로공사	4,876,000	24,380,000	10.0%
(주)태영건설	2,925,600	14,628,000	6.0%
GS건설(주)	2,730,560	13,652,800	5.6%
대우조선해양(주)	2,340,480	11,702,400	4.8%
(주)포스코건설	1,560,320	7,801,600	3.2%
기타	3,120,640	15,603,200	6.4%
합계	48,760,000	243,800,000	100.0%

□ 위치도

